2022년도 제6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Ⅰ. 회의 개요

o 일　　시: 2022. 4. 26.(화요일), 10:30

o 장　　소: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

o 참 석 자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

- 심의위원: 권헌영(분과위원장), 김민아, 박정인, 홍지만 위원

o **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**

1.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····· 분과위원장

2. 전차(제2022-59회)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··· 분과위원

3. 안건상정 ····· 분과위원장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보고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

・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

・제2호 :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

4. 폐회선언 ····· 분과위원장

Ⅱ. 회의내용 및 결과

1. 의결안건

o 제1호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

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,678건(안건번호 제2022-24467호~26144호)
- 회의결과: 안건번호 제2022-24467호~24470호는 언론사 기사를 무단 게시 중인 게시물로, 각 언론사의 저작물을 복제·전송하고 있는 점, 일부 게시물은 게시물에 광고를 게시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.

  안건번호 제2022-24471호~24493호는 ◁◁◁ 카페에 영상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, 다량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전송하고 있는 점, 게시자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가결함.

  안건번호 제2022-24494호~24496호는 ◁◁◁ 블로그에 영상저작물을 편집하여 게시한 사안으로 제2022-24494호는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, 해당 이용 부분만으로는 합법 시장을 대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하며, 제2022-24495호~24496호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높은 '몰아보기' 편집영상의 전체를 복제·전송하고 있는 점,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결함.

  안건번호 제2022-24497호~24520호는 웹하드 및 ◁◁◁ 블로그에 영상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됨. 이 중 순번 제2022-24497호~24519호는 시정권고를 가결하고, 순번 제2022-24520호는 현재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어 삭제·전송중단의 대상이 더 이상

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.

안건번호 제2022-24521호는 웹하드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한 영상저작물이 게시된 사안으로 시정권고를 부결함.

안건번호 제2022-26086호~26144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방송을 배포한 사안으로,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.

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3,203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.

o 제2호: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

- 주요내용: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6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1,014개의 URL 정보에 관한 '구글'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(안건번호 제2022-12725호~13738호)
- 회의결과: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6개, 총 1,014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.

Ⅲ. 회의 의사록

1. 개회선언

o 권헌영 분과위원장: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67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.

2. 전차(제2022-59회)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.

- B 위원: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.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.

- C, D 위원: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.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,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.

2. 안건상정

o 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

- 오진해 전문위원: (심의안건의 저작물명,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)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, 저작권자,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.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'■■■■■■', '□□□□', '★★★★★★★', '○○○○○', '◎◎◎◎◎', '◆◆◆◆◆◆', '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' 등임.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.

- 참석 위원 전원: 해당 없음.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.

- 오진해 전문위원: 금일 심의안건은 4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,462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. 관련 법령과 심의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.

- 오진해 전문위원: 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22-24467호~24470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신문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시한 사안임.
  (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)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.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안건번호 제2022-24467호~24470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.

- B, C, D 위원: (조사 자료를 확인함)동의함. 가결 의견임.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안건번호 제2022-24467호~24470호는 각 언론사의 저작물을 복제·전송하고 있는 점, 일부 게시물은 게시물에 광고를 게시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.

- 오진해 전문위원: 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22-24471호~24493호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신고한 사안으로 ◁◁◁ 카페에서 영상 불법복제물을 게시하고 있는 사안임.
(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)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.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2-24471호~24493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.

- B 위원: 심의대상 게시물이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.

- C, D 위원: 다량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전송하고 있는 점, 게시자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.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-24471호~2449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.

- 오진해 전문위원: 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22-24494호~24496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◁◁◁ 블로그에 영상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임.
  (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)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.

- B 위원: 안건번호 제2022-24494호는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합법 시장에 대한 대체가능성 또한 없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시정권고의 부결 의견임.

- C, D 위원: 안건번호 제2022-24495호~24496호는 '몰아보기'의 기능을 하는 영상을 복제·전송하고 있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가결 의견임.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-24494호~24496호 중 제2022-24494호는 부결하며, 제2022-24495호~2449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.

- 오진해 전문위원: 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22-24497호~24520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 및 ◁

◁◁ 블로그에 영상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임. 이 중 제2022-24520호는 심의일 현재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임.
(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)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.

- D 위원: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.

- B 위원: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. 가결 의견임.

- C 위원: 다만 제2022-24520호는 게시물이 삭제되어 삭제·전송중단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는 것이 타당함.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-24497호~2451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하며 제2022-24520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.

- 오진해 전문위원: 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22-24521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영상저작물이 게시된 사안임.
(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)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

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.

- B 위원: 심의대상 게시물은 국내 저작권 보호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부결 의견임.

- C, D 위원: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.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-24521호는 시정권고를 부결함.

- 오진해 전문위원: (불법복제물 제공화면, 파일 다운로드 화면,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22-24522호~26085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, 음악, 게임, 출판,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.
  (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)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.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.
  ([중점](영화)드라이브 마이 카 (2021)'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22-24998호 '[중점](영화)드라이브 마이 카 (2021)'은 2021. 12. 23. 개봉한 해외 영화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410포인트에 판매 중임.
  ('[중점](영화)엄마 (2022)'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22-25278호 '[중점](영화)엄마 (2022)'은 2022. 5. 11 개봉예정인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230포인트에 판매 중임.
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위 2건을 포함한 3,203건에 대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.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2-24522호~2608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.

- B, C, D 위원: (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)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-24522호~26085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,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.

- 오진해 전문위원: 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22-26086호~26144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. 보호원이 현재 우선조치 대상으로 선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방송 '♥♥♥'임.(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)모바일 웹하드 사이트에 해당 방송이 게시되어 있음.

- D 위원: 심의대상 게시물은 최신 저작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.

- B, C 위원: 동의함. 가결 의견임.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-26086호~2614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.

(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)

"안건번호 제2022-24494호, 제2022-24521호는 부결하고, 안건번호 제2022-24520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, 안건번호 제2022-24467호~24470호, 제2022-24471호~24493호, 제2022-24495호~24496호, 제2022-24497호~24519호, 제2022-26086호~26144호는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2-26086호~26144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."

o 제2호 :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

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1쪽부터 14쪽은 「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」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.

(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)

"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-12725호~13738호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 요청을 가결함"

4. 폐회 선언

o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6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.

2022년 제6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2. 5. 3.

분과위원장 권헌영

위원 김민아

위원 박정인

위원 홍지만